아산신도시 Y CITY 오피스텔 모집공고

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한 아산시 2008-건축과-분양신고-제2호 (2008.9.26)로 분양신고 필증 득함.
■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건축물입니다.
■ 공급위치:충남 아산시 아산배방택지개발지구 M-1블럭(가지번) ■ 공급규모:지상3층 ~ 지상5층 오피스텔 189실
■ 용 도:오피스텔(업무시설) ■ 연면적 : 22,961m²(지하주차장 포함)

■ 공급내역

(단위 : ㎡)

구분 군	구분 TYPE	실별 건축면적(㎡) 전용면적	공용면적	공급면적	기타면적	주차장면적	계약면적	대지지분	층별	호수	공급실수
1	A	49.7980	24.6895	74.4875	7.9567	35.9661	118.4103	26.3924	3	29~37, 38~41, 44~48	48
									4	29~36, 37~39, 42~46	
									5	29~35, 36~37, 40~44	
	B	46.4084	23.0090	69.4174	7.4151	33.5180	110.3504	24.5960	3~5	26~27	6
	C	46.5800	23.0941	69.6741	7.4425	33.6419	110.7585	24.6869	3~5	9~12, 14~18, 20~24	42
	D	41.9000	20.7737	62.6737	6.6947	30.2618	99.6303	22.2066	3~5	13, 19	6
	E	46.4530	23.0311	69.4841	7.4222	33.5502	110.4565	24.6196	3~5	4	3
	F	40.7312	20.1943	60.9255	6.5080	29.4177	96.8511	21.5871	3~5	3	3
	G	41.1490	20.4014	61.5504	6.5747	29.7194	97.8446	21.8086	3~5	2	3
	H	42.6576	21.1494	63.8070	6.8158	30.8090	101.4317	22.6081	3~5	1	3
	I	40.9925	20.3238	61.3163	6.5497	29.6064	97.4724	21.7256	3	65	4
									4	63	
									5	61	
	J	45.6050	22.6107	68.2157	7.2867	32.9377	108.4401	24.1702	3	56~64	27
									4	54~62	
									5	52~60	
	K	42.4128	21.0280	63.4408	6.7767	30.6322	100.8496	22.4784	3	50	3
									4	50	
									5	48	
	L	42.7509	21.1956	63.9465	6.8307	30.8764	101.6536	22.6576	3	50~51	6
									4	48~49	
									5	46~47	
	M	45.7590	22.6870	68.4460	7.3113	33.0489	108.8063	24.2518	3	49	3
									4	47	
									5	45	
	N	36.9148	18.3021	55.2169	5.8982	26.6613	87.7764	19.5645	3	43	3
									4	52	
									5	39	
	O	46.4632	23.0362	69.4994	7.4238	33.5575	110.4807	24.6250	3	42	3
									4	40	
									5	38	
2	가	56.6645	28.0939	84.7584	9.0538	40.9253	134.7375	30.0316	3~5	28	3
	나	58.2330	28.8715	87.1045	9.3044	42.0582	138.4671	30.8629	3~5	25	3
	다	114.5403	56.7883	171.3286	18.3011	82.7255	272.3552	60.7052	3~5	8	3
	라	75.5932	37.3795	112.7727	12.0462	54.4519	179.2708	39.9576	3~5	7	3
	마	67.6717	33.5512	101.2229	10.8125	48.8751	160.9105	35.8653	3~5	6	3
	바	85.5742	42.4271	128.0013	13.6729	61.8050	203.4793	45.3535	3~5	5	3
	사	129.7850	64.3466	194.1316	20.7369	93.7358	308.6043	68.7848	3	55	3
									4	53	
									5	51	
	아	65.4686	32.4589	97.9275	10.4605	47.2840	155.6720	34.6977	3	54	3
									4	52	
									5	50	
	자	60.5502	30.0204	90.5706	9.6746	43.7317	143.9770	32.0910	3	53	3
									4	51	
									5	49	

■ 공통사항
• 전월까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 되었습니다. • 상기 실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 된 법정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 면적도 포함되어 있음. •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.

■ 분양대금 납부일정

(단위 : 원)

구분 군	구분 m²형/(Type)	층	호 공급금액 대지비	건축비	부가세	계약금 (10%) (계약시)	중도금(40%) 1회 (10%) (09.03.01)	2회 (10%) (09.09.01)	3회 (10%) (10.03.01)	4회 (10%) (10.09.01)	잔금(50%) (입주시)
1	74.4875 (A)	3	29~37	46,116,000	109,656,182	10,965,818	166,740,000	16,674,000	16,674,000	16,674,000	83,370,000
			38~41,44~48	46,116,000	105,558,182	10,558,818	162,230,000	16,223,000	16,223,000	16,223,000	81,115,000
		4	29~36	46,116,000	103,512,728	10,351,272	159,980,000	15,998,000	15,998,000	15,998,000	79,990,000
			37~39,42~46	46,116,000	99,412,728	9,941,272	155,470,000	15,547,000	15,547,000	15,547,000	77,735,000
		5	29~35	46,116,000	103,512,728	10,351,272	159,980,000	15,998,000	15,998,000	15,998,000	79,990,000
			36~37,40~44	46,116,000	99,421,818	9,942,182	155,480,000	15,548,000	15,548,000	15,548,000	77,740,000
	69,4174 (B)	3	26~27	42,977,000	102,193,637	10,219,363	155,390,000	15,539,000	15,539,000	15,539,000	77,695,000
		4		42,977,000	96,466,364	9,646,636	148,090,000	14,909,000	14,909,000	14,909,000	74,545,000
		5		42,977,000	96,466,364	9,646,636	149,090,000	14,909,000	14,909,000	14,909,000	74,545,000
	69,6741 (C)	3	9~12,14~18, 20~24	43,136,000	102,576,364	10,257,636	155,970,000	15,597,000	15,597,000	15,597,000	77,985,000
		4		43,136,000	96,821,819	9,682,181	149,640,000	14,964,000	14,964,000	14,964,000	74,820,000
		5		43,136,000	96,821,819	9,682,181	149,640,000	14,964,000	14,964,000	14,964,000	74,820,000
	62,6737 (D)	3	13, 19	38,802,000	92,261,818	9,226,182	140,290,000	14,029,000	14,029,000	14,029,000	70,145,000
		4		38,802,000	87,098,182	8,709,818	134,610,000	13,461,000	13,461,000	13,461,000	67,305,000
		5		38,802,000	87,098,182	8,709,818	134,610,000	13,461,000	13,461,000	13,461,000	67,305,000
	69,4841 (E)	3	4	43,018,000	96,556,364	9,655,636	149,230,000	14,923,000	14,923,000	14,923,000	74,615,000
		4		43,018,000	96,556,364	9,655,636	149,230,000	14,923,000	14,923,000	14,923,000	74,615,000
		5		43,018,000	96,556,364	9,655,636	149,230,000	14,923,000	14,923,000	14,923,000	74,615,000
	60,9255 (F)	3	3	37,719,000	84,664,546	8,466,454	130,850,000	13,085,000	13,085,000	13,085,000	65,425,000
		4		37,719,000	84,664,546	8,466,454	130,850,000	13,085,000	13,085,000	13,085,000	65,425,000
		5		37,719,000	84,664,546	8,466,454	130,850,000	13,085,000	13,085,000	13,085,000	65,425,000
	61,5504 (G)	3	2	38,106,000	85,540,000	8,554,000	132,200,000	13,220,000	13,220,000	13,220,000	66,100,000
		4		38,106,000	85,540,000	8,554,000	132,200,000	13,220,000	13,220,000	13,220,000	66,100,000
		5		38,106,000	85,540,000	8,554,000	132,200,000	13,220,000	13,220,000	13,220,000	66,100,000
	63,8070 (H)	3	1	39,503,000	88,670,000	8,867,000	137,040,000	13,704,000	13,704,000	13,704,000	68,520,000
		4		39,503,000	88,670,000	8,867,000	137,040,000	13,704,000	13,704,000	13,704,000	68,520,000
		5		39,503,000	88,670,000	8,867,000	137,040,000	13,704,000	13,704,000	13,704,000	68,520,000
	61,3163 (I)	3	65	37,961,000	81,835,455	8,183,545	127,980,000	12,798,000	12,798,000	12,798,000	63,990,000
		4	63	37,961,000	81,835,455	8,183,545	127,980,000	12,798,000	12,798,000	12,798,000	63,990,000
		5	61	37,961,000	81,835,455	8,183,545	127,980,000	12,798,000	12,798,000	12,798,000	63,990,000
	68,2157 (J)	3	56~64	42,233,000	96,670,000	9,667,000	148,570,000	14,857,000	14,857,000	14,857,000	74,285,000
		4	54~62	42,233,000	91,042,728	9,104,272	142,380,000	14,238,000	14,238,000	14,238,000	71,190,000
		5	52~60	42,233,000	91,051,819	9,105,181	142,390,000	14,239,000	14,239,000	14,239,000	71,195,000
	63,4408 (K)	3	52	39,277,000	89,902,728	8,990,272	138,170,000	13,817,000	13,817,000	13,817,000	69,085,000
		4	50	39,277,000	84,666,364	8,466,636	132,410,000	13,241,000	13,241,000	13,241,000	66,205,000
		5	48	39,277,000	84,675,455	8,467,545	132,420,000	13,242,000	13,242,000	13,242,000	66,210,000
	63,9465 (L)	3	50~51	39,590,000	90,627,273	9,062,727	139,280,000	13,928,000	13,928,000	13,928,000	69,640,000
		4	48~49	39,590,000	85,345,455	8,534,545	133,470,000	13,347,000	13,347,000	13,347,000	66,735,000
		5	46~47	39,590,000	85,345,455	8,534,545	133,470,000	13,347,000	13,347,000	13,347,000	66,735,000
	68,4460 (M)	3	49	42,375,000	97,004,546	9,700,454	149,080,000	14,908,000	14,908,000	14,908,000	74,540,000
		4	47	42,375,000	91,350,000	9,135,000	142,860,000	14,286,000	14,286,000	14,286,000	71,430,000
		5	45	42,375,000	91,350,000	9,135,000	142,860,000	14,286,000	14,286,000	14,286,000	71,430,000
	55,2169 (N)	3	43	34,185,000	78,250,000	7,825,000	120,260,000	12,026,000	12,026,000	12,026,000	60,130,000
		4	41	34,185,000	73,695,455	7,369,545	115,250,000	11,525,000	11,525,000	11,525,000	57,625,000
		5	39	34,185,000	73,695,455	7,369,545	115,250,000	11,525,000	11,525,000	11,525,000	57,625,000
	69,4994 (O)	3	42	43,027,000	98,493,636	9,849,364	151,370,000	15,137,000	15,137,000	15,137,000	75,685,000
		4	40	43,027,000	92,757,273	9,275,727	145,060,000	14,506,000	14,506,000	14,506,000	72,530,000
		5	38	43,027,000	92,757,273	9,275,727	145,060,000	14,506,000	14,506,000	14,506,000	72,530,000
2	84,7584 (가)	3	28	52,475,000	124,777,273	12,477,727	189,730,000	18,973,000	18,973,000	18,973,000	94,865,000
		4		52,475,000	117,786,364	11,778,636	182,040,000	18,204,000	18,204,000	18,204,000	91,020,000
		5		52,475,000	117,786,364	11,778,636	182,040,000	18,204,000	18,204,000	18,204,000	91,020,000
	87,1045 (나)	3	25	53,927,000	128,230,000	12,823,000	194,980,000	19,498,000	19,498,000	19,498,000	97,490,000
		4		53,927,000	121,048,182	12,104,818	187,080,000	18,708,000	18,708,000	18,708,000	93,540,000
		5		53,927,000	121,048,182	12,104,818	187,080,000	18,708,000	18,708,000	18,708,000	93,540,000
	171,3286 (다)	3	8	106,071,000	252,226,365	25,222,635	383,520,000	38,352,000	38,352,000	38,352,000	191,760,000
		4		106,071,000	238,090,000	23,809,000	367,970,000	36,797,000	36,797,000	36,797,000	183,985,000
		5		106,071,000	238,090,000	23,809,000	367,970,000	36,797,000	36,797,000	36,797,000	183,985,000
	112,7727 (라)	3	7	69,819,000	156,710,000	15,671,000	242,200,000	24,220,000	24,220,000	24,220,000	121,100,000
		4		69,819,000	156,710,000	15,671,000	242,200,000	24,220,000	24,220,000	24,220,000	121,100,000
		5		69,819,000	156,719,092	15,671,908	242,210,000	24,221,000	24,221,000	24,221,000	121,105,000
	101,2229 (마)	3	6	62,668,000	140,665,455	14,066,545	217,400,000	21,740,000	21,740,000	21,740,000	108,700,000
		4		62,668,000	140,665,455	14,066,545	217,400,000	21,740,000	21,740,000	21,740,000	108,700,000
		5		62,668,000	140,665,455	14,066,545	217,400,000	21,740,000	21,740,000	21,740,000	108,700,000
	128,0013 (바)	3	5	79,247,000	177,875,455	17,787,545	274,910,000	27,491,000	27,491,000	27,491,000	137,455,000
		4		79,247,000	177,875,455	17,787,545	274,910,000	27,491,000	27,491,000	27,491,000	137,455,000
		5		79,247,000	177,884,546	17,788,454	274,920,000	27,492,000	27,492,000	27,492,000	137,460,000
	194,1316 (사)	3	55	120,189,000	275,110,000	27,511,000	422,810,000	42,281,000	42,281,000	42,281,000	211,405,000
		4	53	120,189,000	259,100,910	25,910,090	405,200,000	40,520,000	40,520,000	40,520,000	202,600,000
		5	51	120,189,000	259,100,910	25,910,090	405,200,000	40,520,000	40,520,000	40,520,000	202,600,000
	97,9275 (아)	3	54	60,628,000	138,774,546	13,877,454	213,280,000	21,328,000	21,328,000	21,328,000	106,640,000
		4	52	60,628,000	130,701,819	13,070,181	204,400,000	20,440,000	20,440,000	20,440,000	102,200,000
		5	50	60,628,000	130,701,819	13,070,181	204,400,000	20,440,000	20,440,000	20,440,000	102,200,000
	90,5706 (자)	3	53	56,073,000	128,351,819	12,835,181	197,260,000	19,726,000	19,726,000	19,726,000	98,630,000
		4	51	56,073,000	120,879,091	12,087,909	189,040,000	18,904,000	18,904,000	18,904,000	94,520,000
		5	49	56,073,000	120,879,091	12,087,909	189,040,000	18,904,000	18,904,000	18,904,000	94,520,000

•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, 각 실별 층 및 향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확인하기 바람.
•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오피스텔명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, 등록세,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.
•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채대장비를 제외한다)의 50%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, 중도금 납부기준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임자이며,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.리건, 동별 건축공정이 30%이상이어야 함
• 잔금은 오피스텔의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,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, 임시 사용승인일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3항에 의해여 잔금중 50%는 입주일에 나머지 50%의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.
•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·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,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

■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
• 입주자 모집공고일(2008.9.29)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(배우자 포함), 외국국적동포) 및 외국인 포함 • 군필로 1인당 1실 신청가능하며, 다른 군에 중복신청이 가능함.동일군내에서 1인이 2실 이상 신청시에는 해당 청약을 무효 처리함)
•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. • 공급신청은 공급면적별로 통합 · 단순화한 "군별" 에 따라 접수하고, 랜덤유형(type)은 청약자가 신청한 랜덤유형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.

■ 공급일정

구분	청약접수일	당첨자발표일	계약기간
일 시	2008. 10. 1 ~ 2008. 10. 3 (10:00 ~ 17:00)	2008. 10. 4 (14:00)	2008. 10. 7 ~ 2008. 10. 9 (10:00 ~ 16:30)

■ 청약신청장소 :
• Y CITY 견본주택 방문상담(충남 아산시 아산배방택지개발지구 상업블럭 • Y CITY 견본주택 전화번호(1588-5296)

■ 청약 신청금

청약신청금	납부방법
500만원	• 견본주택 남부(아산 · 천안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말정 지기말수표 1매로 준비 요망)

■ 청약시 구비사항

구분	구비서류
본인 신청시 (배우자 포함)	• 공급신청서(청약서은 견본주택에 비치) • 본인 또는 배우자 인장(서명도 가능) • 본인확인증표: 주민등록증(본인 또는 배우자) 또는 운전면허증, 국내거소신고증(재외동포), 외국인등록증(외국인) ※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: 주민등록등본 등(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) • 청약신청금 환불입금 통장 사본1부(청약신청인 명의)
제3자 대리청약시 추가사항	※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 존 · 비속 포함)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. • 청약자의 인감증명(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)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(외국인이 인증된 위임장 1통당)으로 신청접수 장소 비치) •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며, 또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명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.

■ 당첨자 발표 및 선정방법
• 발표일자 : 2008. 10. 4.(14:00) • 발표장소 : 당사 견본주택 • 당첨자선정 및 동 · 호수 결정방법 : Y CITY 견본주택내에서 동일 군별로 청약자 입회하에 층 · 호수를 추첨하여 결정함.
• 당첨자 확인은 상기장소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적오보기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. • 미계약세대 발생시 당사에서 임의 공급함.

■ 청약 신청금 환불(낙첨자 및 당첨자 전원)
• 환불기간 :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(2008. 10. 6 ~ 10.13(10:00~16:30) 단,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• 환불방법 : 청약신청시 제출한 본인명의의 환불계좌로 무통장입금함.[단, 지정계좌(청약자 본인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계좌에 한함)로 이체신청하신 분은 자동이체됨
•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치 않음.

■ 계약체결 및 계약금납부
• 계약일자 : 2008. 10. 7. ~ 2008. 10. 9(10:00~16:30) 당사견본주택 • 계약금 납부방법 : 계약자명의로 농협협동중앙회 본점대금입금계좌에 반드시 무통장입금하여야 함니다. •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니,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금을 체결하여야 함.
• 중도금 및 잔금 :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무통장입금만 가능(자세한 내용은 분양광고서 참조) • 계약금 및 분양대금 입금계좌(계약당일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무통장 입금)

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
농협협동조합중앙회	071-01-286852	요진건설프로젝트금융투자(주)

※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입금하시기 바라며, 입금시 동 · 호수 및 계약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.

■ 계약시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
본 인	• 계약금(무통장 입금증) • 청약신청접수(영수증)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• 주민등록등본등 • 인감도장 • 인감증명서(용도도 오피스텔계약용) • 제3자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(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1통) •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(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1통)
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	–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(배우자, 직계존 · 비속 포함)하며, 상기 본인 계약제출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•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: 오피스텔 계약위임용 1통) •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) 및 인감도장 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상시은 견본주택에 비치)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.[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,세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
■ 계약조건
• 신청시 제출한 세대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,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. • 주민등록번호 위조,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,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과발 조치함.
• 주거 및 상업과 동일건물상에 위치함으로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 ·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· 조망권 · 소음 ·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향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 •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수함

■ 입주자 사전점검(사전점검은 개별통보 예정) • 입주예정일 약 1~2개월 전에 도래, 도장공사 등 강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

■ 준공 및 입주예정일 • 2011년 6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)

■ 융자조건(중도금조면 무이자)
• 대출기관 :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아산시지부 지점 • 대출금액 : 오피스텔 총 분양대금의 40% 단,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) • 대출조건은 금융기간 대출지적 조건이 되는 분에 한하며, 대출불가세대는 본인이 지체로 납부하셔야 함니다.

■ 유의사항
•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㎡이 표시 법정단위인 ㎡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(평형환산 방법 : 평방면적㎡) x 0.3025 또는 평방면적㎡/3.3058)
•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절차 없시에서 임의 분양함. • 신청 장수 된 세대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.
•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세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. •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.
•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. • 중요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주택 및 상가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.
•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,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는 위약금 등을 일체 지불하지 않음.
• 실별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한 정산 처리함. • 계약전 시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•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, 복제수 증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. • 홍보 카다로그,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(스도시개발, 학교, 도로망 등)은 당사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•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처음힘. •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, 금융신용불량자라이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시는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니다.
• 공개장 지는 공공에 계약되는 시설물에 대한 의미로 평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장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. •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, 품질,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현저이 품질, 품기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시킬 할 수 있음.
• 마감자재 내용은 현물,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. •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 "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-397호,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활정 분한 뒤 회사차원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.
•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, 카다로그,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법기상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• 본 공고는 현지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등기 시점이 도래한 시점에서 이동기 전매시 소유자 변경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및 기타 제반 비용은 매도자 부담임.
• "부동산 등기법"상 실거래가 기재가 의무이므로 분양대 전매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용도는 "일반업무시설"로 분류되며, 오피스텔의 건축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-635호, 2006.12.30)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체결하여,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– 본 업무시설의 건설시설로서, 상하수도, 지역난방, 도시가스, 전기 및 통신은 아산배방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완료시 공급하도록 이루어지기 바랍니다. –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,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–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. – 공용부분 냉난방 및 전력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규약에 의하여 집행됩니다. –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에 상업시설 등 일체의 부분에 대해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– 건축물 및 주택법을 준수해야 시공한 단열공법 의하여 일조량이 감소(침해)될 수 있습니다. –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. – 견본주택의 일부는 지역 특성상 일정한 무는시 복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지역 지역의 불일치하여 민간은 KS 기준에 의합니다.
– 구조계산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. – 오피스텔 및 상가의 색채 등 외관디자인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– 주차장은 상업시설과 진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– 호수별로 평면이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실별 평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대평면에 따라 가구 및 미끄럼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– 외부창호 디자인, 파라핏 사이즈, 유리 두께 등은 통등 심험결과 및 안정성 · 기술상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– 오피스텔 외부창호는 일반 대리인 의외에 의해 실별, 층별, 위치별로 창호재질 및 형태가 다르게 설치됩니다. – 일부세대 외벽에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습니다. – 오피스텔 분양 후 상가부분 상쇄면적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– 열리레이테는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이 공용으로 사용합니다.단 설계변경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– 업무시설 및 업무시설 일부 실의 옥상에 기계실이상지붕가 설치됩니다. – 업무시설 준 공금은 지연난항의 영향을 이용하여 공급합니다.
– 업무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 통신용케블 트레이의 등의 경로는 추후 상황상부공간 및 복도를 사용합니다. – 업무시설의 파나용 완공기의 설치는 1000㎡ 당 1개가 설치됩니다.(공용부 복도에 파나용 완공기 설치)
– 일부층에 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 등의 설비공간 일부 공간이 설치됩니다. – 업무시설의 냉방방식은 전용면적 50㎡이하에 한해서 바닥난방으로 사용됩니다. – 업무시설 공용으로 설치된 장비의 유지, 보수,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.
– 조경배치 및 시설물의 디자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– 최상층 옥상 지붕에 경관용 옥상녹화가 설치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(옥상녹화부분은 참조한 관리상 통제됩니다)
– 방화문 개폐방향은 피난동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대한주택보증(주)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대상
(보증채무의 내용) 보증회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4조2항에 따라 주택부지가 보증시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채임을 부담합니다.
(보증이행 대상) 아래 해당 하는 것 전이업주금리 납부)
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